

---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주관 | 김경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프로그램

- 13:30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인사말                    김경수 의원,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
- 13:45 사례발표1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①** : (주)비제이씨
- 13:55 사례발표2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②** : 오앤씨 엔지니어링
- 14:05 사례발표3            (주)한화 기술탈취 사례 :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 14:15 발제1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 유형 분석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  
                                  손보인 변리사·변호사 | 대한특허변호사회
- 14:30 발제2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  
                                  박정만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14:45 지정토론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박진기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 수석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김주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 15:45 종합토론
- 16:10 폐회

## 목차

인사말	토론회 인사말 / 김경수 의원	04
인사말	토론회 인사말 / 유동수 의원	06
인사말	토론회 인사말 / 제윤경 의원	08
사례1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① : (주)비제이씨	10
사례2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② : 오엔씨 엔지니어링	15
사례3	(주)한화 기술탈취 사례 :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23
발제1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 유형 분석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 / 손보인	33
발제2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 박정만	50
토론1	토론문 /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62
토론2	토론문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69
토론3	토론문 / 박진기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 수석	70
토론4	토론문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71
토론5	토론문 / 김주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76
토론6	토론문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77

## 인사말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를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출신 김경수 입니다.

먼저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마치 자신의 기술인 것처럼 유용하는 등의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대 포털 기업이 스타트업기업의 모바일게임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곳 중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7.8%인 644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금액은 1조1,000억 원에 달했고,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은 16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현재 중소기업수가 354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기업과 피해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사례를 분석해보니 독일의 경우 범국가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기술 탈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기업 산업 기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혁신과 기술안보 관점에서 형사 처벌 강화, 기술정보 보호 등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책임위원으로 법적·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남근 변호사님, 발제에 나서주신 손보인, 박정만 변호사님, 토론에 나서주신 정연덕 교수님, 이동주 본부장님, 박진기 수석님, 성경계 과장님, 김주화 과장님, 박성준 국장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유동수 의원님, 제윤경 의원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말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대기업이 사업계약이나 위탁을 미끼로 중소기업에 기술 공개를 요구한 후, 이를 무단으로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의 의욕을 잃게 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대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술 편취와 유용의 경우 제도적 공백이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대기업들의 기술 편취와 유용을 막고 중소기업을 더욱 힘껏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중소기업에 기술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기술 편취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발의한 법안 두 건이 오늘 오전, 산자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위탁기업이 갑질을 하거나 수탁기업의

기술을 침탈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입찰참가 제한 범위를 확대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특허청이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대기업과 소송을 시작하면 5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사전에 조사하고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논의된 좋은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산업을 일으키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어렵게 참석해주신 피해 중소기업 사장님들,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동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함께 주관해주신 김경수 의원님, 제윤경 의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도적 보완책이 완성돼서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말

---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입니다.

국회에 들어오는 많은 민원 중 대표적인 것이 갑을문제를 담고 있는 하도급불공정행위입니다.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에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을의 입장인 하도급업자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고발이나 신고도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도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술을 변형하여 자신의 기술로 편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의 아이디어가 사업원천의 전부인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기술편취는 사업의 핵심을 도둑맞는 것으로서, 이들의 행위는 매우 악랄적이고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지난 4월 6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하도급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현실을 연구·분석한 자

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 정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앞에서 밝힌 정부의 종합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기업 등 기술편취로 좌절되거나, 기술탈취로 생업기반을 상실한 하도급업체의 사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9월 1일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가 편취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제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나온 많은 다양한 사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① : (주)비제이씨

1

###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증거자료 1] 2004년에 이미 (주)비제이씨 단독으로 특허 출원**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B01D 53/34 B01D 53/84	(11) 공개번호 10-2005-0122688	(43) 공개일자 2006년12월29일	
(71) 출원번호 10-2004-0048284	(72) 출원일자 2004년09월28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비제이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 남동공단 31동길-1호도 D동 2층		
(72) 발명자	박현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88 영희광아울더스 101-1605		
(74) 대리인	박경태		
상사질문 : 없음			
(54) 브이오씨 계감기법			

더불어민주당

윤지우위원회

## 2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 [중거자료2] 기술개발 테스트 당시 회의록



1. 회의목적  
기존 캬바이오 제품사용시 약취배출허용치 (500배이하)가 초과되어 1공장, 4공장에 적용하고 있는 약취저감효과가 입증된 BJC약품을 적용하여 약취를 개선하고자 함
- 5.도장5부 요구사항  
1) 초기 SEEDING 금액 640만원은 BJC에서 지급  
2) BJC의 3개월간 TEST비용은 기존업체 (캬바이오 테크놀로지아시아) 3개월 평균사용금액으로 결정하되 BJC 실사용량이 상기금액대비하여 적을 경우는 실사용금액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3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 [중거자료 3-1] 현대차가 요구해 (주)비제이씨가 제출한 자료

순번	제공 일시	현대차가 요구한 자료	(주)비제이씨가 제공한 자료	현대차 무단 유용
3	2013. 11. 4	도장생기팀 이** 사원이 순환수 처리관련자료와 약품 MSDS 전화로 요청	(주)비제이씨 약품 4종류 (캡슐라이저, 킬링제, 응집부상제, 미생물제) MSDS, 도장부스 순환수처리	논문 13쪽
4	2013. 11. 13	도장생기팀 이**사원이 CWS 미생물관련자료 전화로 요청	커스텀OE약취제거원리, Product profile, 미생물의약취제거	논문 18, 19, 26, 31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4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 [중거자료 3-2] 현대차가 요구해 (주)비제이씨가 제출한 자료

순번	제공 일시	현대차가 요구한 자료	(주)비제이씨가 제공한 자료	현대차 무단 유용
5	2013. 12. 12	도장생기 이** 사원이 LAB테스트결과 및 라인테스트 계획수립통보 개인메일로 재요청	TX랩테스트, 201312신규미생물 균주 CWS 적용시험 계획서, 신규균주시험	논문 18, 37, 38쪽 특허 실시예 1, 도면 1, 2, 3, 4
6	2014. 1. 29	도장생기 이** 사원이 신규미생물 투입계획과 균주선택 정보요청	2014년 2월 7일 1공장테스트	논문 20~28, 31, 40.41, 50쪽
7	2014. 3. 20	도장생기 서** 대리가 회의자료를 전화로 요청	1공장 테스트 경과보고서	논문 42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5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 [중거자료4] (주)비제이씨의 기술이 유용된 증거

1공장 CWS의 사용하고 있는 기존 미생물이 **물부양과 자일렌에 관한 신규균주** 50% 추가로 투입된 후 물부양에 제거된(50%) 미생물은 기존 CWS에 비해 10배 이상

3. 사전 물부양  
물부양과 자일렌의 적용량이 있는 신규미생물 투입에 의한 미생물 개체수과에 관한 테스트  
- (시험결과 별첨)

4. CWS현황 자료 요약  
1. 기존미생물: 평양양 사용(120kg/day)  
2. 신규미생물 투입개요(현황) 적용 Check Sheet(참고)

날짜	투입량
09(11-7일차)	120kg/day (840kg 기준투입 가능)
14(11-15일차)	90kg/day (500kg)
24(11-45일차)	90kg/day (1,740kg)

물 부양을 위한 개발된 제품으로 저조시 적소 결과 **물부양, 자일렌, 물부양** ...

**극기**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05도장생기팀 김수호는 약 400mm급으로 부스순환수의 순환속도는 Fig.2와 유사하게

같은 날 사용되는 미생물은 KCI의 용인으로 매우함(제거) 용인으로 매우 한 양분은 300~4.5.6.7가 나타났다

테스트 시작하기 투입미생물의 투입량을 위하여 **20일 120kg/day의 투입량** ...

**투입량(20일) 50%까지 90kg/day로 투입량을 줄여** ... 1,000kg을 투입 ...

하였다. 미생물 초기투입 후 일주일 간격으로 부스순환수의 toluene도, xylene ...

농도의 부스배기구의 T-C도, 육질미생물도 **증가**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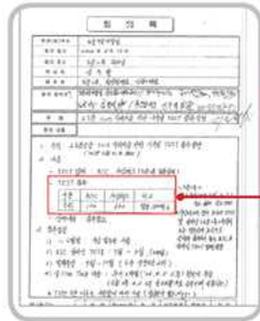
(주)비제이씨가 제출한 자료

현대차 이\*\*사원 논문에 무단 사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6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중거자료 5-1] (주)비제이씨 기술을 현대차가 인정한 증거



- TEST 결과 -			
구분	BJC	가성테크	비고
약취	100	630	약취 50%이하 ↓

테스트 결과  
거성테크 약취 630으로 부적합  
(주)비제이씨는  
약취 100으로 적합 결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7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중거자료 5-2] (주)비제이씨 기술을 현대차가 인정한 증거



테스트 결과  
캠바이오는 약취 허용치  
초과되어 철수하고  
약취저감효과가 입증된  
BJC 약품을 적용하여  
약취를 개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8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중거자료 5-3] 현대차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

1. 현대차가 가장 먼저 '거성테크'에 제안했으나 부적합
2. 이후 '캠바이오'에 제안했으나 부적합
3. 마지막으로 (주)비제이씨에 제안한 결과 '약취저감효과 입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9 현대자동차 - (주)비제이씨 기술탈취

[중거자료 6] 이\*\* 사원이 출입을 통제해 4공장 정문에서 약품반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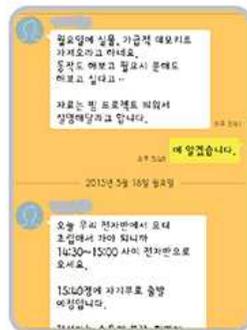
2016년 7월 14일  
오전 6시 55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② : 오엔씨 엔지니어링

### 1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2차 기술탈취

[증거자료 1] 현대차가 상세한 기술설명을 요청한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2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2차 기술탈취

[증거자료 2]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사용중인  
오엔씨 엔지니어링 전동실린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3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2차 기술탈취

[증거자료 3]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중인 SKF사의 전동실린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4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2차 기술탈취

[중거자료 4] 보쉬제품에는 문제가 있으나  
오엔씨의 제품은 우수하다고 표기된 현대차 문건

종류	부품	부위 LO
	부품 체결 안정성 : ONC#1 우수	부위 Lc
	부품 체결 안정성 : ONC#1 우수	
비	① 설치된 보쉬#1 실린더 제품은 특정 위치로 이동후 유 탈 작업해야 하고 원위치 셋팅해야하므로 현장에서 공할 관리 안됨. => ② 설치된 제품 교체 필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5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2차 기술탈취

[중거자료 5] 현대차 한\*\* 차장이 2주 사이에 3차례나 요구한 동영상

[video]20150421\_113645.mp4

- ◆ 자동화기술부에서 1번째 요청한 동영상 [2015-5-18]

[mix]2015-05-26 TM SCREW 테스트2

- ◆ 자동화기술부에서 2번째 요청한 동영상 [2015-5-26]
- ◆ 자동화기술부 요청 (3번째) 으로 보전에서 동영상 촬영  
해서 자동화기술부로 SNS으로 보냄. [2015-6-1]  
(참고: 신청인은 자동차 사내에서 사진 촬영 못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6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2차 기술탈취

[중거자료 6] 오엔씨 기술을 현대차가 침탈한 증거

2015년 12월 10일, 오엔씨 엔지니어링 대표가 기술  
유출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고 하자 SKF 담당자들이  
급히 찾아와서 오엔씨가 기술유출과 특허침해 등을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현대차에 구매등록될 수 있  
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을 나눔

녹취록은 다음 날인 2015년 12월 11일 통화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취록 00분 16초)

오엔씨 : 어제 얘기했던 내용으로 업무협정 약정서를 해줄 수 있어요?  
SKF : (어제 협의했던 약속 내용을) 적을까요? 적을까요?  
오엔씨 : 불편하지 않으면 해주면 좋고, 불편하면 어쩔 수 없고  
SKF : 어차피 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SKF가 오엔씨라는 회사를 현대자동차에 등록시키는 것을 적  
극적으로 협조하는 조건 하에 SKF는 특허권자인 박재국 사장  
과의 협의를 통하여 박사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행  
사를 SKF에 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취록 22분 40초)

SKF : 공식적으로 만났으면 지장을 찍던, 사인을 하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했으니까, 신의성실로..

(녹취록 25분 02초)

오엔씨 : SKF가 한거랑 제가 한거랑 걸보기에는 같은데, 내부적으로  
부품은 달라. 나는 이미 저 부품들을 폐기를 해야 돼.  
다른 방법으로 제고를 처리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SKF : 그렇게는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게요.  
당장은 손해본 비용을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6년 4월 29일, SKF 직원과 통화내용  
(녹취록 14분 47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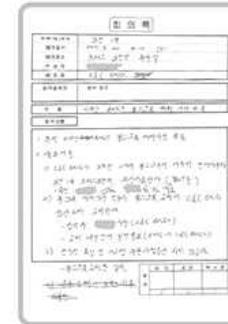
오엔씨 : 현대차에서도 오엔씨거 그대로 배껴서, (배긴 기술을) SKF가  
(다시) 배껴가지고, 현대차에 (제품을) 들여오고 있다고 하더  
라고..

SKF : 근데 그거를 보쉬도 배껴서, (다들) 그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7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1차 기술탈취

[중거자료 1] 2011년 5월 20일 현대차 회의록



"오엔씨가 보유한 2개의 볼스크류에  
대하여 ... 현대차에 무상지급한다"

"(기존의) 볼스크류 교체시  
오엔씨 참관하여 교체한다"  
- 교체 1주일 전에 일정통보

"추후 구매시 가격은 기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8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1차 기술탈취

[중거자료 2] 2011년 5월 20일 현대차 회의록

현대차가 의원실에 설명한 내용은 "당시 볼스크류 기술은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오엔씨가 기술적으로  
기여한 것은 없다"고 주장

그러나 당시 오엔씨 엔지니어링이 현대차에 발송한 이메일의  
설계계산은 대단히 전문적이며 수차례 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오류를 완벽하게 개선한 것임

[이후 이메일 내용과 이메일에 첨부된 설계 계산 첨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한화 기술탈취 사례 :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 기술탈취·편취 의혹 사례 발표

###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vs (주)한화

태양전지 제조용 솔라 스크린 프린터 장비  
(주)한화 법률 위반 사례(의혹) 발표

## 목차

1. (주)한화 테크엠 / (주)한화 업체현황
2. (주)에스제이 이노테크와 (주)한화 합의를
3. (주)에스제이 이노테크와 (주)한화 설비 제조 위탁 계약
4. (주)한화 요구에 의해 제공한 설비 기술자료 및 장비 UP-GRADE 목록(1-1)
5. (주)한화 요구에 의해 제공한 설비 기술자료 및 장비 UP-GRADE 목록(1-2)
6. (주)한화 요구에 의해 제공한 E-Mail자료 일부 목록
7. (주)한화큐셀코리아 진천공장 투자
8.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VS (주)한화 유사/카피 의혹(1-1)
9.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VS (주)한화 유사/카피 의혹(1-2)
10.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vs (주)한화 / 외산 설비 비교
11. (주)한화 법률 위반 사례(의혹)
12. (주)한화에게 요구하고 묻습니다
13.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기술 개발 연혁
14.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호소의 맺음말
15. 국내 기술이전의 성공적인 사례

### 1. (주)한화 테크엠 / (주)한화 관련 현황



## 2. (주)에스제이 이노테크와 (주)한화(당시 ㈜한화테크엠) 합의서

### ◆ 합의서 내용(2011년~현재)

- (주)한화 그룹 계열사에 장비비 공급하는데 있어 상호협력 공동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주)한화 그룹 계열사 태양광 설비 공동 공급(공급범위 확정)
- 태양광 메탈리제이션 인라인 전체 설비에서
- (주)에스제이 이노테크는 **Screen Printer 핵심 공정설비를 공급.**  
(주)한화는 1)Dryer 2) Furnace 3)Tester 4)Sorter 공급.
- (주)에스제이 이노테크는 **독자적인 수주 활동 금지.**
- (주)한화는 **독점판매권을 가진.**
- 상호 제공 **기술자료 업무 협력 목적 외에 사용금지 및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3년의 협약기간과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한다.



## 3. (주)에스제이 이노테크와 (주)한화(당시 ㈜한화테크엠) 설비 제조 위탁 계약

### ◆ 태양광 설비 제조 위탁 계약(2011년~2015년)

- 2011년 08월 **1400매/1시간** 성능의 태양광 메탈리제이션 인라인 스크린 프린터 공정설비 제작, 설치, 시운전.
- 약 2011년 ~ 2015년 **요구사항**
  - ① **계약에도 없는 지속적인 설비 업그레이드 요구**
    - ㉠ 2011년 - 1400매/1시간
    - ㉡ 2014년 - 1600매/1시간
    - ㉢ 2014년 - 1800매/1시간
  - ② **관련 기술자료 및 경영 자료 과다 요구**
  - ③ **기술 테스트 및 시운전 성능 평가자료 제공 등.**

특수공정수주계약	특수공정수주계약
<p>1. 1400매/1시간 생산량 업데이트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2.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3.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4.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5.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6.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7.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8.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9.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1.10. 2011년 8월 20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ol>	<p>2. 1600매/1시간 생산량 업데이트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2.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3.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4.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5.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6.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7.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8.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9.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2.10.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ol>
<p>3. 1800매/1시간 생산량 추가 테스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2.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3.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4.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5.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6.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7.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8.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9.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3.10.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ol>	<p>4.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2.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3.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4.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5.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6.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7.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8.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9.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li>4.10. 2014년 5월 13일, 계약서 및 기술자료</li> </ol>

## 4. (주)한화 요구에 의해 제공한 기술자료 및 장비 UP-GRADE 목록(1-1)

### ◆ 2011년 ~ 2012년 공정 및 인쇄 테스트 진행

- 1-1. 스크린 프린터 장비의 한화테크엠 아산 공장 입고
- 1-2. 공정 및 인쇄 테스트 기간: 테스트 기간(약 5개월) 아산 상주하며, 진행 및 대응함.
  - 1) 2011. 08. 30 ~ 2011. 12. 29
  - 2) 2012. 01. 04 ~ 2012. 02. 10
- 1-3. 공정 테스트 진행: **한화솔라윈(이후 한화규셀로 통합) 기준으로** 공정 및 인쇄 테스트를 진행 함.
  - 1) 공정 테스트에 따른 웨이퍼 파손 관리 진행 (메일자료11\_01: 2011. 9. 19)
  - 2) 한화테크엠 요청으로
    - 드라이어(SJ이노테크 자산) 장비 1차 대여 및 입고 (메일자료11\_02: 2011. 10. 17)
    - 드라이어 장비1차 반출, (메일자료11\_03: 2011. 12. 12)
  - 3) 프로그램 수정 요청에 따른 프린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진행
    - UPH 기준 변경 (메일자료 11\_04: 2011.11.16)
  - 4) 한화테크엠의 추가 테스트 요청으로 드라이어 장비 2차 대여 및 입고 (메일자료 12\_01: 2012. 1. 9)
    - 드라이어 장비 2차 반출, (메일 자료 12\_02: 2012. 2. 3)

### ◆ 2013년 고객 대상 장비 성능 시현(엔지니어 지원 등)

## 5. (주)한화 요구에 의해 제공한 기술자료 및 장비 UP-GRADE 목록(1-2)

### ◆ 2014년 업무 추가 요청

#### ▶ 지원 및 내용

- 2-1) 장비의 생산량 향상 요구. **1400 ea/hour -> 1500 ea/hour** (메일자료 14\_01: 2014. 02. 04)
  - 1) 1차 대응: 2014. 2. 6 ~ 2. 11 (메일자료 14\_02, 14\_03)
  - 2) 2차 대응: 2014. 5. 13 ~ 5. 15, 5. 26 ~ 5. 30 (메일자료 14\_06, 14\_07), 원료 보고서는 '참고자료 1401' 파일 참조.
  - 3) 3차 대응: 2014. 7. 8 ~ 7. 9 (메일자료 14\_09)
- 2-2) 마스크 사이즈[기본사이즈: 450(L) X 450(W)]의 크기를 고객사가 사용하는 크기(350X350)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기존의 마스크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함. (메일자료 14\_01: 2014. 02. 04)
  - 대응 및 검출 지그 납품 완료. '참고자료 1406' 참조.
- 2-3) 마스크 높이 측정 유닛 추가 설치 요청. (메일자료 14\_04: 2014. 4. 17)
  - 설치 및 대응: 2014. 6. 25 ~ 6. 26 (ICT 이대형과장, 메일 자료 14\_05)
- 2-4) 인쇄 부품의 종류인 스퀴저를 바 타입에서 다이아몬드 타입으로 변경 요청. (메일자료 14\_08: 2014. 5. 28)
  - 다이아몬드 타입의 샘플 테스트 후 발주 요청. '참고자료 1405' 파일 참조.
- 2-5) 워크 테이블 유리 및 플루드바 도면 요청에 따른 도면 송부. (메일자료 14\_11. 2014. 7. 14)
  - '참고자료 1403', '참고자료 1404' 파일 참조.
- 2-6) 생산량 향상 추가 테스트 진행. (메일자료 14\_10. 2014. 7. 18 ~ 19일)
  - 1500 ea/hour -> 1700 ea/hour 이상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1800 ea/hour 이상 가능성 테스트 임. '참고자료 1402' 파일 참조.
- 2-7) 인쇄 테스트 진행. (메일자료 14\_12. 2014.12.10)
  - 인쇄 테스트 대응 진행 함.

### ◆ 2015년 11월 잔금 미지급 정산 합의서 체결

## 6. (주)한화 요구에 의해 제공한 E-Mail자료 일부 목록

### ◆ E-Mail 제공 (전체 중 일부 영업비밀제공내역 발취)

구분	정보 또는 자료	요구 일자	요구 방법
원가정보	구매품 발주 업체 및 가격 정보	2011. 5. 3.	이메일
	스페이 파트 리스트 품목 및 금액	2011. 5. 6.	이메일
	PV CELL 협력사 현황	2011. 7. 25.	이메일
장비 규격 및 세부사양 정보	장비 부품명 도면 자료	2012. 5. 17.	이메일
	장비의 사용자 측 요청할 사항 정보	2012. 6. 28	이메일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2013. 9. 13.	이메일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2014. 5. 20.	이메일
	큐셀 향 스크린 프린터 라인 레이아웃	2014. 8. 13.	이메일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 ~ 2015년

## 8.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vs (주)한화 유사/카피 의혹(1-1)

구분	설비	공정			
		Wafer drop unit	컨베이어 구동부	2열 컨베이어	Align 카메라 위치 및 역할
(주)SJIT					
(주)한화					
도 해		파손된 Wafer를 Box에 넣기 위해 컨베이어를 다운위치 이동	Wafer 이동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구동할 때 있어서, 구동 모터에 구동회로와 피동회로를 Timing Belt로 연결하여 Belt를 구동함	Dual로 컨베이어를 구성함	Align 카메라들의 위치가 컨베이어 상부에 위치하고, 이 위치에서 Wafer를 Align 하기 위해 측정함

## 7. (주)한화큐셀코리아 진천공장 투자

- (주)한화큐셀 코리아 2015년 05월 태양광 셀 공장 3천 500억원 투자.
- 2016년 04월 공장 완공 및 가동시작.
- 태양광 메탈리제이션 라인 설비 (주)한화 단독 공급.



(주)한화(기계부문) 태양광 설비



## 9.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vs (주)한화 유사/카피 의혹(1-2)

구분	설비	공정			
		Belt conveyer	Free Align 및 Wafer Align 구조	Mask unit	Wafer 이송 시스템
(주)SJIT					
(주)한화					
도 해		Belt conveyer 구조	Free Align 및 Wafer Align 구조	Mask unit	Wafer 이송 시스템

## 10.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vs (주)한화 / 외산 설비 비교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주)한화 DEK(영국) BACCINI(이탈리아) ASYS(독일)

장비 업체명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주)한화	DEK	BACCINI	ASYS SOLAR
프린팅 테이블 구조					
특징 및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 테이블 고정</li> <li>- 마스크 Alignment</li> <li>- 리니어 사포드를 사용한 트랜스퍼 방법의 웨이퍼 이송.</li> <li>- 인쇄 직후 웨이퍼 파손검사함(기본).</li> </ul>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 테이블에 Pin을 사용하여 Wafer를 1차 고정.</li> <li>- 마스크 Alignment</li> <li>- 벨트에서 수직방향으로 적 방식 사용한 웨이퍼 이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이블 롤 방식.</li> <li>- 마스크 Alignment</li> <li>- 벨트 및 롤 웨이퍼 이송.</li> <li>- 인쇄 직후 웨이퍼 파손검사함(옵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 테이블이 업/다운 동작.</li> <li>- 마스크 Alignment</li> <li>- 벨트로 웨이퍼 이송.</li> </ul>

## 12. (주)한화에게 요구하고 묻습니다.

1. (주)한화와 당사의 합의서는 자동 연장 조항으로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데, (주)한화는 왜 해당 합의서에 따른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계열사에 단독 납품을 하고 있는지도요?
2. (주)한화는 당사가 제공한 기술이 요구한 스펙에 이르지 못하여 당사 설비를 납품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사는 요구 스펙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예기하였는데, 당사가 언제 해당 스펙 충족이 어렵다고 했ند가요? 그에 대해 제대로 당사와 협의한 적이 있나요?
3. (주)한화 스스로 개발한 태양광 설비가 결국은 당사가 최종적으로 제공했던 스펙과 동일한 스펙이 아니요? 결국 당사 설비의 형태와 스펙을 그대로 유용한 것이 아닙니까?
4. (주)한화는 당사가 4년 동안 제공한 수많은 기술자료 등의 내용 어느 것 하나, 어느 일부분 하나도 절대 유용한 적이 정녕 없던 말입니까?
5. 당사의 기술을 전혀 유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설비라면, 어떻게 외관적인 모양이나 작동방식이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습니까?
6. 또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그 개발에 대한 인력, 비용, 기간 등의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말 (주)한화 독자적으로 아무런 유용없이 개발한 것을 확인한다면, (주)한화가 개발한 태양광 설비를 당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과연 유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 11. (주)한화 법률 위반 내용(의혹)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 3에서 정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위반

제12조의3(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제2조 1호 차목, 및 3호 라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2조 1호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조 3호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3.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 배임행위

제 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정형의 형과 같다.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기술 개발 연혁

- 2008년 ~ 2009년까지 Solar Cell Metallization In-Line System 양산 1세대/2세대 국내최초 개발 및 납품
- 2010년 대경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 사업 참여  
 과제명: 고효율 태양전지 Wafer 제조를 위한 메탈리제이션 인라인 스크린프린터 시스템 기술 개발  
 주관기관: 산업자원부  
 사업기간: 2010년07월01~2012년04월30일  
 총사업비: 11억3천만원(정부출연금 8억4천만원)

- 사업성과
- 1) 개발이행률 직접 매출:75억원 2) 신규고용:21명 3) CE 인증 2건
  - 4) 8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메탈리제이션 슬러웨어퍼 스크린프린터 외)
  - 5) 세계 최고 사양의 장비 개발 및 원천 기술 보유
-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社 연구소에서 진행된 외산 장비와의 비교 테스트에서 당사 장비의 우수성 확인됨

◆ 고객 장비 대비 Printer Printing Quality (비어넷솔라 국·외 주요 고객사) 비교

국적 장비인 Baccini Printer 대비 우수한 Printing quality가 구현됨. 상대적으로 SJ Inno Tech Printer가 직간접 및 Interrupt Line 감소, 높은 A/R을 나타냄.

또한, 필드 테스트 결과 비교 및 안정적으로 Finger가 형성되며 Printing Align 및 Finger 형성도에서 우수한 특징을 보임.

◆ 특허 및 인증 실적

기관명	종류	구분	출원(등록)번호	발명명칭	출원(등록)일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한국	등록	10-0994199호	태양전지용 웨이퍼 프린트 장치	2010.11.08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한국	등록	10-1005902호	메탈리제이션 슬러웨어퍼 스크린프린터	2010.12.07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한국	등록	10-1005904호	웨이퍼 검사용 인쇄머리 장치	2010.12.07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한국	등록	10-1018675호	슬러웨어퍼 프린트기의 스핀너 각도조절장치	2011.02.23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한국	등록	10-1106773호	결정질 슬러웨어퍼 웨이퍼 정렬장치	2009.09.16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한국	등록	10-1137995호	웨이퍼 위치 고정 장치	2012.04.12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한국	출원	10-2010-0096135	스크린 프린터 작동 테이블의 상하 이동장치	2010.10.01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한국	출원	10-2011-0129785	스크린 프린터	2011.12.06

기관명	구분	제품	등록년도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CE인증	Magazine(Multi-Loader/Unloader)	2011
(주)에스제이 이노테크	CE인증	Solar-Cell Metallization System Printer	2012

## 14. (주)에스제이이노테크 호소의 맺음말

### 1. (주)한화 라는 대기업의 횡포

태양광 장비 산업의 성공 사례 및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자던 합의를 위반하고, 중소기업의 많은 인력과 자금, 수년간의 시간과 노력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독자적인 기술을 제조 위탁자라는 상위의 직위를 악용하여, 2011년 장비납품 시점부터, 2015년 장비 납품대금 완납까지, 다년간의 부당한 자료 및 공정 개선작업을 요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기술을 편취, 무단복제를 하여 그들개발사에 동종장비를 납품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 2. 정부의 경제 정책에 역행 하는 대기업 집단

2008년 부터 30억원의 개발자금을 투자하여 1세대/2세대 설비를 완성하였고, 이후 자체기술개발과 12억원 정부자금을 지원 받아 3세대의 솔라 메탈리제이션 인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은 약 4년의 긴 기간동안 조금씩 발취하여 결국은 유용한 것입니다. 상생협력의 신뢰와 믿음에 기초하여 양사가 합의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대기업이 편취한 기술을 무단 유용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처벌 및 제재가 없고, 합당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는 무자비한 대기업의 횡포로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연구 개발에 대한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는 이러한 행위는 이 땅의 많은 청년 창업자의 도전 의지까지도 빼앗는 암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3. 꿈꾸는 청년세대의 앓울한 창조경제 미래상

지금도 앓울리에 대기업의 횡포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사례가 이루어 지고 반복되는 현실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의 법률에서 여러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지만, 대기업에 맞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인제나 약자의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원천 기술을 보호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를 꿈꾸는 청년세대의 미래는 앓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Best Solution & Service for you

감사합니다

## 15. 국내 기술이전의 성공적인 사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기계연구원이 한 건의 기술을 이전하면  
서 업체로부터 100억원의 이전료를 받기로 하였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원, 회장 이상진)은 15일 ㈜대성하이텍(대표이사 최우각)에 유기 태양전지 생산공정 관련 기술, 제조방법 및 기술이전하고 그에 따른 정액기술료 5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유휴공 유리같은 기판을 이용하고 이 기판 위에 다양한 종류이 전도성, 반도체성, 절연성 물질을 극박도 특성도 확보에 알도록 인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조 공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60cm제이던 반도체 공정이 65cm로 넓고, 제조단가도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기계원 관계자는 "정 무출력연구기관의 연구 기술이전 금액이 전년 4천만 원만 대비 배가 2008년 2억 5천만 원이 기술이전료로 책정됐다"며 "기술 가치 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장인 김준호 박사는 "반도체 공정이 깊고 있는 최우각 유력기업 등 의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90%, 유력기업은 90%까지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공중"이라며 "를 포함한 유기 태양전지 제조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사례가 없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전 기술은 유기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웨이퍼는 태양전지, 대면 적 태양전지, 특수발전용 태양전지 등에 적용할 수 있다"며 "이 분야 시장규모가 2018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어 막대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기계원은 이날 오전 대전특구 내 기계원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최우각 차 의장장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조인식을 열었다.

kjinh@yna.com

#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 유형 분석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 - 대기업 vs 중소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 -

손보인 / 변리사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 1.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편취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이하 모두 통칭하여 ‘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형법」(배임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이 있다.

## 2.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 사례 유형 및 문제점

### 가. 법적 개념에서의 사례 유형들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를 단순히 사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창출 ⇒ ② 양자 계약 등의 관계 설정 ⇒ ③ 기술자료 제공 또는 공개 ⇒ ④ 기술자료 유용 ⇒ ⑤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적인 내용에 법적 개념을 고려하여, ‘기술자료’의 종류·형태, ‘계약’ 성립여부, 및 ‘계약’의 종류에 따라 그 사례 유형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이하 이러한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기술탈취·편취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점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나. 시기별 유형 및 그 문제점

#### 1)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제공(최종 계약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서, 대기업의 협상력이 월등하고 번거로운 계약적 속박을 회피하려는 대기업 입장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어, 서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 자료를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대기업도 계약 체결 이전에 중소기업의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기에,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자료’를 자연스럽게 대기업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기 마련이다.

계약이나 비밀유지 약정이 체결되기 전(협상 과정에서의 비밀유지약정도 없는 경우)에 제공된 ‘기술자료’는 우선 해당 계약이 위탁계약이지 않는 한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의 적용이 어렵다. 또한 ‘기술자료’가 산업재산권법에 의한 등록이 되었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는 형법(배임죄),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의 검토를 고려해야 하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자목, 차목) 등에 의한 구제에 의존해야 하나, 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2) 계약 체결 이후, ‘기술자료’ 제공

다행히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해당 계약의 종류에 따라 위탁계약이 아닌 경우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자

료인지 여부 및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정도 등에 따라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어떠한 계약이 위탁계약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그 기술자료 보호여부 및 보호범위가 정해지거나, 다른 여러 개별 법률의 내용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계약에 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나. 계약 종류별 유형 및 그 문제점

### 1) 위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행히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 양 법에서는 담당 기관에 의한 조사권이 인정되며, 고의·과실의 입증 전환이 되고, 분쟁조정절차, 손해배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도급법은, 상생협력법과 달리, 특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에 의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상향시킨 규정이 있다. 또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에 있어 비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하도급법에서 보호되는 ‘기술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보호’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의 요건보다 명문상 더 과한 비밀관리 유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는 강한 노력 요건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배상해 줄 수 있도록 손해액 상향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 위탁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개발계약’ 또는 ‘공동공급계약’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 시 계약 제목을 이들로 정한다.

‘공동개발계약’의 경우,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이 없거나 구두로 이뤄진 경우 또는 시제품을 상용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 대기업은 이를 위탁계약이 아닌 ‘공동개발계약’을 주장하거나 아예 단독 개발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만약 ‘공동개발계약’을 인정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술개발 성과에 따른 이익의 배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계약에서 이를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떠나 다른 어느 법률에도 수익 배분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고 오히려 대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산업재산권법인 특허법을 살펴보면, 공동 특허권자는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독 실시 가능을 전제로 생각해보면 공동 특허권자는 다른 권리자와 이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떠한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기술을 실시(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여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이에 관련하여서는 공동 개발 기술에 관한 수익 배분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동공급계약’의 경우, 대기업이 공급할 제품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급할 제품 사이의 호환성·연관성, 그리고 향후 잠정 고객들의 요구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업그레이드 요구를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하곤 한다. 이렇게 제공된 ‘기술자료’가 대기업에 의해 유용되는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나머지 법률에 의한 보호만이 가능하다.

## 다. 기술자료 종류별 유형 및 그 문제점

### 1) 하도급법 상 비밀인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하기 마련인데, 이는 '비밀'이라는 요건과 일정정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별도의 비밀유지약정(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인정될 수 있는)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는 애초부터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보다도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여건에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데, 이러한 요건 중 노력의 정도에 관하여서는 2015. 1. 28. 일부개정에 따라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도를 완화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참고로 과거 대법원은 '상당한 노력'이란 ①어떤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이와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사정 상 개발한 '기술'에 관한 비밀 자료의 유지 또는 관리에 '합리적인 노력'조차 기울이기 쉽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자료의 비밀 관리성에 '합리적인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 3) '기술자료'가 비밀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가 외부에 공개가 이뤄져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생협력법, 형법, 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차목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상생협력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특허청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및 차목은 3년 정도의 기간을 보호하거나,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인정되어야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형법 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한데, 배임죄는 '영업비밀'의 유용은 물론, '비밀'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이 '영업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기술자료 유용에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

## 3. 입법 또는 정책 제안 사항

### 가. 하도급법 관련

-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요건을 현재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 또는 '비밀'로서 표시만 한 정도의 노력으로 완화하는 개정
- 손해배상액 추정규정 도입

-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 서면 요건에 관한 불이행 시, 그에 합당한 벌칙 규정 또는 손해배상에서 대기업에게 불리한 추정규정을 신설할 필요성 있음.

#### 나. 상생협력법 관련

-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위탁계약 유형과는 다른 유형 또는 포괄하는 유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예. 위탁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개발, 공동공급 계약 등으로 확대 적용).
- 손해배상액 추정규정 도입
- 고의적인 기술 유용인 경우, 3배 손해배상 규정 도입
- 중소기업청의 조사권한 강화
-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청이 주관하는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의 통합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함.

#### 다.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 중소기업 기술이 '산업기술'이 되는 요건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액 규정 도입
- 손해배상액 추정규정, 법정손해인정 규정 도입
- 고의적인 기술 유용인 경우, 3배 손해배상 규정 도입

#### 라. 산업재산권법 관련

- 권리를 공유하는 경우, 실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의 공동 배분에 관한 규정 도입

## 4.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 관련 법률

###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행위)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gt;</p> <p>1. "<b>부정경쟁행위</b>"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b>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b>(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p> <p>(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p> <p><b>차.</b> 그 밖에 <b>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b>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p> <p><b>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b></p> <p>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1.6.30.&gt;</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1.6.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정한 물건의 폐기</li> <li>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li> <li>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li> <li>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b>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b>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lt;개정 2011.6.30.&gt;</p>
---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6.1.27.>
-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서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30.>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1.6.30.>
- 1. 물건의 양도수량
-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

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 1. 제2조제1호(이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건설기술
-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벌칙)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14., 2016.3.29.>

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6.3.29.>

③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다. 형법

####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6., 2016.1.27.>

####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7조(손해액의 인정)

**마.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0.1.25.>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29.>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 침해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

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정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1.6.30.>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

**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2013.7.30.>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1. 제2조제1호(이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사. 특허법

####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표1>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 관련 법률 비교

	산업재산권법 (특허,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자목, 차목)	형법 (배임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행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 前 보호가능성	◎	○	△	○	○	×	×
계약종류에 따른 보호	-	-	신의칙 관계	-	-	수탁·위탁거래	위탁계약
기술자료 요건	공개가능, 특허청 등록요건	공개가능, 3년 제한 혹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	공개가능, 중요한 자산	공개가능, 산업기술 요건	비밀성(합리적인 노력)	공개가능	비밀성(상당한 노력)
기관 조사권한	×	×	◎	×	×	○ (자료제출요구, 현장 조사)	○ (조사, 전속고발권)
분쟁조정 절차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	×	산업기술분쟁조 정위원회	×	중소기업청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손해배상 규정	○ (손해액추정, 법정손해인정)	○ (손해액추정, 법정손해인정)	-	×	○ (손해액추정, 법정손해인정)	○ (고의·과실 입증전환, 법정손해인정)	○ (고의·과실 입증전환, 3배, 법정손해인정)
벌칙규정	○	×	○	○	○	×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49

발제 2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

박정만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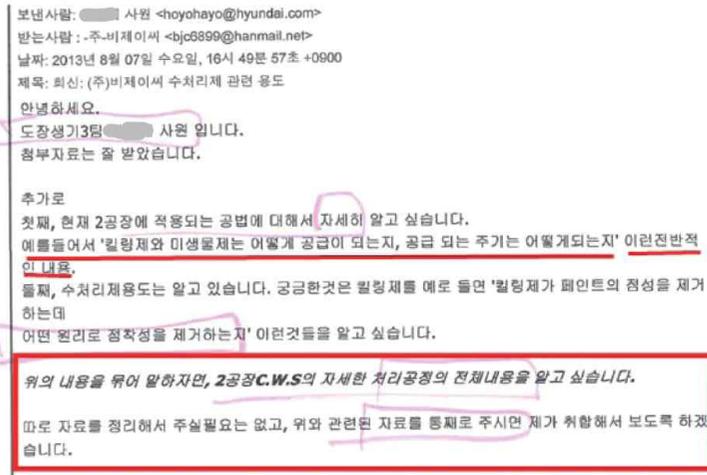
-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련의 법개정이 있었으나, 국내 거래 실무에서는 주로 하도급거래, 위·수탁거래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는 그것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마치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탓에 위와 같이 개정된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막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며, 이를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대기업 등에게 우월적 지위에 의한 무임승차를 묵인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
- 이하에서는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가 문제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법령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규율이 가능한지 혹은 법적공백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2. 피해사례1)

### 가.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및 유용사례(주식회사 비제이씨 사례)

- ① 2013. 08. 06. 현대자동차 도장생산기술팀(이하, “도장생기팀”) 이OO사원이 미생물 분해를 통해 수성페인트냄새를 감소시키는 기술을 지닌 (주)비제이씨에게 수처리제 용도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청.
- ② 2013. 08. 07. (주)비제이씨는 위 이OO사원 요청에 응해 킬링제 BIO-1100, 응집부상제 BIO-2100, 미생물처리제 BIO-3100 제품의 용도와 사용목적을 정리한 파일을 제공.
- ③ 파일을 제공받은 위 이OO사원은 수처리제 용도에 관한 자료를 받은 즉시 (주)비제이씨에게 자세한 처리공정의 전체내용을 요구함. 아래 이메일을 살펴보면, 위 이OO사원은 (주)비제이씨에게, 페인트 점성을 제거하는데 어떤 원 리로 점착성을 제거하는지를 포함한 자세한 처리공정의 전체내용을 질의함.

<그림1> 현대자동차 도장생산기술팀 사원과 (주)비제이씨 간의 메일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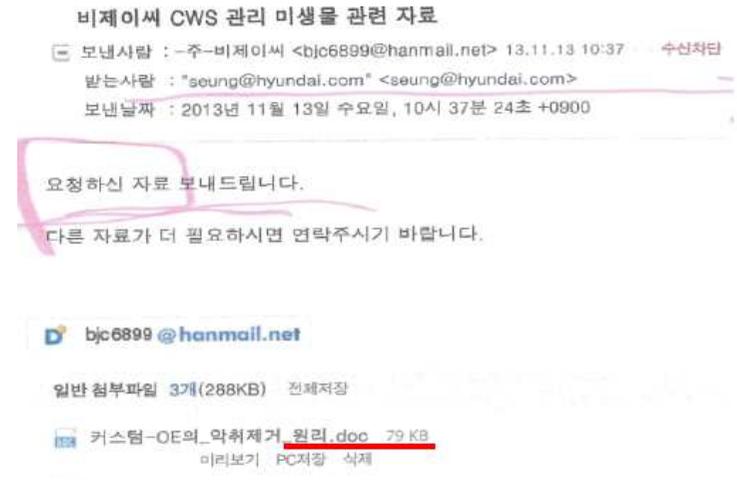
- ④ 2013. 08. 08. 위와 같이 자료제공을 요구받은 (주)비제이씨는 위 이OO사원에게

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의원실 2016 국정감사 자료집 참고

도장부스 순환수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

- ⑤ 2013. 11. 04. 위 이OO사원은 다시 (주)비제이씨에게 약품 MSDS와 순환수 처리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고, 위 요청에 따라 (주)비제이씨는 관련 자료 제공
- ⑥ 2013. 11. 13. 위 이OO사원은 (주)비제이씨의 미생물 제품의 약취제거 원리, 제품 프로파일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주)비제이씨는 위 이OO에게 커스텀-OE의 약취제거원리, PRODUCT PROFILE, 미생물의 약취제거 원리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

<그림2> 현대자동차 도장생산기술팀 사원과 (주)비제이씨 간의 메일내용



- ⑦ 2013. 12. 12. 현대자동차의 위 이OO사원은 (주)비제이씨에게 재차 자료제공을 요구하였고, (주)비제이씨는 1공장 신규미생물 적용 시험계획서 자료(TX랩테스트, 신규미생물균주 CWS 적용시험 계획서, 신규균주시험 Check Sheet까지 포함)를 제공.
- ⑧ 2014. 01. 19. 위 이OO사원은 2014. 01. 19. (주)비제이씨에게 신규미생물 균주에 관한 정보를 요구.
- ⑨ 2014. 03. 20. 위 이OO사원은 (주)비제이씨에게 1공장 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

- ⑩ 2014. 06. 25. 현대자동차 제2공장 김OO대리가 (주)비제이씨의 미생물 적용, 약취 저감계획서, 미생물 처리 결과 등에 관한 기술자료 요구하자 (주)비제이씨는 이를 발송함.
- ⑪ 2016. 10. 31. 현재 구글에서 「자동차 도장공장 폐수의 생물학적처리 (Biological treatment of wastewater in automobile paint shop)」라는 이름의 논문을 검색하면, 경북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찾을 수 있는바, (주)비제이씨는 현대자동차의 위 이OO사원이 2015. 12.경 발표한 위 논문에 (주)비제이씨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그대로 실린 것이라고 주장함.

<그림3> 자동차 도장공장 폐수의 생물학적처리 논문 검색 결과



초록

- ⑫ 또한 현대자동차는 2015. 01. 09.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도장설비의 약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및 이를 이용한 약취제거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고, 2015. 03. 02. 이를 등록하였는데, (주)비제이씨에 의하면 위 특허공보에 기재된 실험내용과 데이터가 (주)비제이씨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와 동일하고, 기재된 미생물 역시도 (주)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에게 제공한 균주 및 관련 정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
- ⑬ 현대자동차와 (주)비제이씨는 2005.부터 2015.년까지 10년 이상 제품과 기술을 공급. 그러던 중 2013.부터 현대자동차는 위와 같이 (주)비제이씨에게 기술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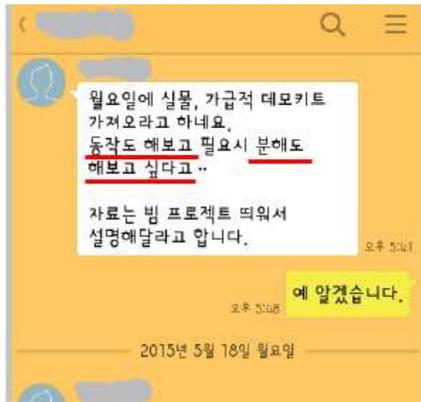
을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직원의 논문, 산학협력 공동특허에 유용.

- ⑭ 2015. 05. 현대자동차는 (주)비제이씨에게 도장생산기술부에서 신규 미생물을 자체 개발하였음을 이유로 납품을 중단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단행.
- ⑮ 2016. 08. 0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2016. 08. 31.까지 3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안 제시하였으나, 현대자동차가 거부.

나.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및 유용사례(오엔씨 엔지니어링 사례)

- ① 2011.경부터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전동실린더 고장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② 2015. 02. 05.경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현대자동차 자동화기술부는 기존 전동실린더 공급업체인 보쉬(Bosch)社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대응이 미흡해 제3업체로부터 문제점들을 개선한 대체 제품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
- ③ 보쉬(Bosch)社 등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전동실린더 등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난 오엔씨 엔지니어링 대표는 줄곧 현대자동차 기술담당자들과 기술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현대자동차 전동실린더 개선 문제를 의뢰받음.
- ④ 오엔씨 엔지니어링 대표는 당시 특허출원 준비 중이던 다차종 전동실린더(한국등록특허 제1476960호)의 기술을 적용한 개선제품을 제작해 현대자동차에 방문하여 테스트 실시.
- ⑤ 방문 테스트 실시 결과 세 가지 문제 중 두 가지 문제가 오엔씨 엔지니어링 개선 제품을 통해 해결되고, 나머지 한 문제도 추가 연구를 통해 연이어 해결됨.
- ⑥ 2015. 03. 오엔씨 엔지니어링 대표는 기술제품에 대한 주요 개선내용과 효과를 현대자동차에게 전달.
- ⑦ 2015. 05. 18. 개최된 기술설명회에서 현대자동차는 오엔씨 엔지니어링 대표가 가지고 간 기술제품을 분해하여 원리와 작동에 대해 확인하고, 현대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제품임을 확인함.
- ⑧ 2015. 05. 18. 기술설명회 당시까지만 해도 다국적기업인 SKF는 볼스크류 방식을 적용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한 1차 기술설명회를 진행함.

<그림4> 현대자동차와 ㈜오엔씨 간 문자 내용



- ⑨ 2015. 06. 11. 위 SKF는 현대자동차에게 2차로 개선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제안서 상의 제품에는 앞서 오엔씨가 개발한 제품과 동일하게 TM스크류 방식이 적용된 기술이 들어 있었음.
- ⑩ 2015. 10. 26. 오엔씨 대표는 위 SKF가 오엔씨가 개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현대자동차가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됨.
- ⑪ 요컨대, 현대자동차는 전동실린더 고장 사례가 지속되자 문제해결을 모색하던 중 국내 기업 오엔씨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전달받은 후 이를 자신과 거래하던 다국적기업에게 유출하여, 위 다국적기업이 해당제품을 납품하게 함.
- ⑫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2010.부터 2011. 05.경에도 현대자동차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체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주장
  - 2010. 03. 현대자동차 보전1부 S1라인 AMCT 볼스크류 고장 ⇒ 현대차직원이 오엔씨에게 기술개발 요청 ⇒ 오엔씨 문제해결을 위한 볼스크류개발 착수 ⇒ 2011. 05. 20. 신규개발한 볼스크류 2세트를 현대자동차에게 제공 ⇒ 연락두절 ⇒ 현대자동차는 오엔씨가 개발한 신규 볼스크류와 동일한 제품을 OO테크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

### 3. 기술탈취에 관한 현행법령과 문제점

####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피해사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함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위 차.목 위반에 대한 특허청장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의 조사권한을 배제. 실제로 특허청도 위 차.목 위반은 자신의 권한이 아님을 들어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가 없음을 자인.

####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위반사업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고 있으나, 피해사례는 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중소업체의 사업제안 - 대기업 거래거절 - 중소기업 제안사업과 유사기술 유용) 하도급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술탈취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은 그 적용이 어려움.

- 하도급 담당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기술탈취 피해에 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임을 들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태도(공정거래법 제59조).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목부터 아.목까지 생략)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호부터 7.호까지 생략)

-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또는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사례와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움.

###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을 위해 2014. 05. 28. 법이 제정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장 등 국가기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지원사업을 하며(제9조), 중소기업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지정(제14조),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의 해결절차(제23조)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을 뿐, 기술탈취를 규제하거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 중소기업청의 기술탈취 조사권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함.

### 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③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차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④,⑤항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부터 11.호까지 생략)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제24조의2)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탁·위탁계약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으나(제25조 제12호), 수탁·위탁거래 또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주로 제조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알지 못했던 기업을 구제할 수 없으며,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문제되는 피해사례를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 조사권한이 없어 피해사례와 같은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탈취에 관하여 행정청인 중소기업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음.

## 바. 소결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피해를 현행법령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

- ① 어느 법에서도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탈취를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
- ②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지 근거법을 찾기 어렵고,
- ③ 소관 행정청도 불분명하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규제에 대한 법적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
- ④ 결국 피해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도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고, 천문학적인 감정비용을 영세 피해자가 감당하기도 어려우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sup>2)</sup> 현실적인 피해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는 枯死하는, 즉 말라죽는 형편임.

2) 2009년부터 2011.까지 특허 침해 소송 관련 평균 손해배상액은 한국의 경우 평균 7,800만 원인데 반해 미국은 평균 102억 원임. 윤기승 충남대학교 대덕특허정책연구소,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4. 결론: 정책적 대안

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피해의 정도, 피해 기업의 태도 등을 분석하고, 현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를 대체 어떤 국가기관이 담당하여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입법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① 하도급이나 위탁거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기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예외(중소기업이 타인의 기술자료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협약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기업 등과 중소기업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 ② 대기업 등은 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기술을 유용할 수 없도록 규율.
- ③ 중소기업청에게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점검하게 하고, 피해사태 신고가 있으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권한을 부여.
- ④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반드시 법률전문가,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손해산정 전문기관에게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기관이 산정한 손해액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질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탈취문제의 해결방안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I. 배경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유동수, 제윤경, 김경수 의원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다’라는 반응들을 보이는 곳이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해주신 현대자동차와 한화의 기술탈취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 인력 충원과 자본이 빈약한 중소기업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어렵게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기업 간의 상생이 잘 이루어지는 외국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직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이 잘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방안을 위하여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 II. 관련 입법과 제도 현황

### 1. 입법

기술유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개정(2015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정(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2012년), 「하도급법」 개정(2011년) 등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선작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 밖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발명진흥법」,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형법」, 「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등 기타 법령에 직·간접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하여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어 기술 유출행위를 규제하고, 중소기업 기술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2. 기술자료 임치제도(任置制度)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24조의 2에 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자료 보호제도로 수·위탁거래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핵심기술 정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또한 개발기업(주로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대기업의 안전한 기술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3. 중소기업 기술 유출 분쟁조정제도

중소기업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기술유출전문가에 의해 분쟁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하여도 소송시 법률적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 및 개편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출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 4.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생성시점과 원본 여부의 증명을 위해 전자문서로부터 고유한 식별 값인 전자지문(Hash Code)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향후 원본검증이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과의 비교를 통해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용이하게 입증해 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도용이나 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영업비밀의 원본 존재와 보유시점에 대한 입증을 돕기 위해 2010년 11월,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등록 건수는 80,790건으로 국내외의 유사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5.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작성 및 유용행위 금지

「하도급법」에서는 수직적 관계의 원하도급자 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작성 및 유용행위 금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자료요구 행위 시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 또한 2011년 하도급법 개정(2011. 3. 29.)에 따라「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기술자료의 개념, 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및 거래단계별 침해 유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6. 기술인력 빼가기 금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인력 빼가기”를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로서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7. 중소기업 보호 관련

2014년 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보호지도사 자격제도, 분쟁조정기관(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립,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 및 기술 유출방지 관련 각종 지원사업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을 보충하여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8. 대기업의 기술탈취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기술탈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개념, 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규정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2011년 7월 6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은 기술자료이고, 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첫째,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둘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셋째,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9. 최근의 입법안

에너지 데일리, 2016.07.25

유동수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유동수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이 당한 기술침탈 행위를 행정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25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10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탈할 경우 특허청장이나 지지체장이 부정경쟁행

위 위반여부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은 이 법 제2조제1호 '자목'에서 말하는 유사상품 모방과 '차목'에서 말하는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0가지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중 현행법에 의해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가목'부터 '사목'까지로 대기업의 피해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 유형인 '자목'과 '차목'은 조사범위에서 누락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지 않아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주로 계약을 미끼로 기술을 제공받은 뒤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016-07-14 조경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법' 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4선)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을 제대로 보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겨 나갈 바란다"고 밝혔다.

## III. 보호 방안

### 1. 단순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필요성

정부는 2014년 5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및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점에서 기술 탈취 행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쉽게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조적 성과가 시장가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사실 납품가격이나 납품 조건 등 구체적 계약 내용까지 제3자가 간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법적 강제로 상생협력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입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를 규제하는 것은 공생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공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 입법보다는 조화와 균

형을 갖춘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정사회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데 있고, 모두가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특허 손해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실효적인 손해 배상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 개선 및 가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원하도급 관계의 기업관계에 국한되므로 광범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로 보호받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공정화법')에 기술탈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우리나라 입법사상 최초로 손해배상액 가중제도를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2014년까지 3년내 기술유출피해를 경험하고 건당 피해규모도 약 15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면 하도급공정화법에 기술탈취 및 이에 대한 3배까지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종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논의도 있어 왔지만 징벌적 또는 가중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실손해(actual damage)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손해액이 낮게 산정될 경우 여전히 실효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손해액을 실효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증거법적 수단과 이를 실현하는 특허법상 손해추정규정(특허법 제128조)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실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예컨대 침해시 대기업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제재 외에 추가적으로 기술탈취를 당한 당해 기업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공정위의 제재로 인한 금원은 국고에 귀속되지만, 손해배상은 직접 중소·중견 기업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방안의 기본은 기술탈취의 대상이 되는 특허, 영업비밀 등을 본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실효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특허와 영업비밀의 근본적인 보호 문제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문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온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방지방안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령입니다. 만일 특허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법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중소기업들이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적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 현행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침해사실의 입증의 어려움,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이 언급됩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9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국내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침해 및 손해배상 관련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사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인용액이 청구액의 10%라고 합니다. 국내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사건이 전체의 26.8%에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권리자의 청구가 전부인용된 것이 9.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배상액을 늘려야 중소기업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특허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한편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4. 기술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호

기업이 보유한 기술유출 보호에만 법제도적인 규율만을 하게 되면, 연구 개발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경시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자를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기술유출 범죄자로 보면서, 연구 성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자들의 개발의욕과 자존심은 바닥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IT, SW 분야의 경우, 실적에 맞는 대우를 하면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토론 2

**토론문**

---

이동주 /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

토론 3

**토론문**

---

박진기 /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 수석

## 토론문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 1.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관련 조항의 입법 연혁 및 그간의 제도 보완 사항

- (제도 도입) 2010. 1월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등)조항을 신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그러나 원사업자의 강요행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후 시정조치나 제재에 그쳐 사전예방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었음
- (제도 확충) 2011. 3월 법개정(2011. 3. 29)을 통해,
  - 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하였고,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요구시 일정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을 해주도록 하는 서면발급 의무규정을 도입
    - 서면발급 의무부과는 원수급사업자간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수급사업자 권리주장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큼

- (제재수준의 상향) 3배 손해배상제도를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행위에 최초로 도입하고('11.6. 시행)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였으며('13.11.29. 시행),
    - \*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를 현행 60점에서 최고수준인 100점으로 강화
  -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하도급법상 원칙적 고발대상에 포함하고('14.1.1. 시행),
  - 금년에는 5억 원까지 정액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음('16.7.25 시행)

### 2. 제도 도입이후 공정위의 법 집행 실적

1] 시정조치 2건 내역				
○ (주)엘지하우시스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건(시정명령)				
- 창호 금형 설계도면을 요청하고 서면 제공 없이 이를 수령				
○ LG화학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건(과징금 16백만원, 검찰고발)				
- 배터리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 제공을 총 23회에 걸쳐 요구하고, 자회사인 중국 남경 법인에게 제공하여 배터리라벨을 생산하는데 활용				
2]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처리 내역(23건) : 과징금 부과 1건, 종결처리 22건				
연번	피심인(기업명)	조치일	처리결과	비고
1	(주)이베이코리아	13.08.06	심의절차종료	사실관계 확인 곤란
2	(주)영풍	12.04.18	심의절차종료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아님
3	(주)케이티	12.04.18	심의절차종료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아님
4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13.08.06	심의절차종료	사실관계 확인 곤란
5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3.04.18	심의절차종료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6	롯데피에스넷(주)	13.09.04	심의절차종료	피해보상 등 합의 등으로 신고 취하
7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4.11.25	심의절차종료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8	한국쓰리엠(주)	13.06.11	심사불개시	피해보상 등 합의 등으로 신고 취하
9	케이티텔레캐(주)	14.10.16	심의절차종료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10	동부대우전자(주)	15.09.21	심의절차종료	사실관계 확인 곤란
11	현대로템(주)	14.12.30	심의절차종료	피해보상 등 합의 등으로 신고 취하
12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14.12.31	심의절차종료	피해보상 등 합의 등으로 신고 취하
13	(주)케이티	13.11.14	심의절차종료	피해보상 등 합의 등으로 신고 취하
14	(주)엘지화학	15.08.03	고발,과징금	-
15	(주)제노코	14.10.17	심의절차종료	피해보상 등 합의 등으로 신고 취하
16	센싸터테크놀러지스코리아(주)	16.04.05	무혐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17	(주)일화	15.03.05	심의절차종료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아님
18	한전케이디엔(주)	14.12.11	심의절차종료	피해보상 등 합의 등으로 신고 취하
19	(주)휴빌론	15.05.12	심의절차종료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아님
20	에스케이플래닛(주)	15.05.26	심의절차종료	피해보상 등 합의 등으로 신고 취하
21	(주)테크스트	16.08.31	무혐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22	(주)한경희생활과학	16.05.19	심사절차종료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아님
23	한미아이티(주)	16.07.26	심사불개시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아님

### 3. 현행 기술유용 제도의 한계

<신고가 많지 않음>

□ 기술유용행위는 신고 자체가 많지 않고\*, 기술자료 해당여부, 해당 기술이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의 위법성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발 및 조치가 쉽지 않음

\*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23건에 불과

○ 또한 신고인이 피조사인으로부터 금전보상 등을 약속받고 신고를 취하한 후, 공정위 조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아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애로가 많았음

\* 사건종결 사유 : 신고인이 금전보상 등을 약속받고 신고 취하(8건), 하도급거래가 아님(6건),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음(5건), 사실관계 확인 곤란(3건)

<기술유출 사건의 대부분이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나 인용되는 설문조사 통계자료는 대부분 '기술유출'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기업 전·현직 임직원, 경쟁업체 종사자가 경쟁업체 이직, 창업, 대가 수수 등 사적이익을 위해 기술자료를 몰래 빼내는 것을 의미

\* 영업비밀 유출사건의 약90%가 경쟁사업자 내지 다른 사업자 간(중소기업-중소기업)에 발생(출처: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특허청))

\*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계자는 외부인 보다 내부인으로 인한 유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직 임직원 31.5%, 현직임직원 24.7%), 대부분의 기술유출이 인력유출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2015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중기청)

□ 언론보도 사례 등 기술유출 발생 건 중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례는 극히 일부로 다수의 사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상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

\* 2015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2.3%, 기술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답변한 수급 사업자 비율은 1.1%임

### 4. 기술유용 관련 공정위의 향후 추진 방향

○ 홍보·교육 분야를 강화

- 중기중앙회, 상공회소 등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실시 및 홍보 확대

○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신고 강화

- 기술유용 행위를 포함한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신고 유도 등 감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신고포상금제 도입('16.1월)

○ 부처간 협업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중소기업기술보호 종합 상담센터(중기청) 및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조정·중재기구(중기청, 특허청, 산업부)와 연계하여, 기술유용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감시 강화

-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 교류 및 협조 MOU'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회의 개최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

○ 기술유용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및 엄정한 법 집행

- 중소기업기술보호 종합 상담센터(중기청) 및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조정·중재기구(중기청, 특허청, 산업부)와 연계하여, 기술유용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감시 강화

- 법위반이 혐의가 높은 경우 강도 높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

---

토론 5

## 토론문

---

김주화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

토론 6

## 토론문

---

박성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발행일 2016. 11. 03

발행처 김경수 의원실·유동수 의원실·제윤경 의원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 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